

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근거 마련된다

- 「행정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민 권리보호 및 편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우리나라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행정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추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손실보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현행 제도를 국민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허가·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철회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손실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에는 손실보상의 대상·범위, 보상금 산정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을 채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채납가산금으로 인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개별법 간에 채납가산금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 법률에서는 채납가산금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한 경우도 있어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 채납가산금 이율을 연 3%, 연 6%, 연 7.5% 등 다양하게 규정

아울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국민에게 통지할 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및 기대효과

제 도	내 용	기대효과
손실보상 일반원칙 (신설)	· 수익적 처분 철회 시, 손실보상의 일반적 근거 마련, 개별 법령의 손실보상 조항에서 규정해야 하는 사항 명시(손실보상 대상, 보상금 산정기준, 지급 절차 등)	국민 재산권 보호 강화
과징금 (보완)	·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개별법상 체납가산금 간 형평성 제고 및 국민 부담 완화
이의신청 (보완)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안내	국민 편의 증진

이완규 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헌법적 가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우리 행정에 내실 있게 구현되어 국민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붙임 : 1. 「행정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2. 「행정기본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담당 부서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책임자	팀 장	구본규	(044-200-6740)
		담당자	서기관	고주석	(044-200-6741)

① ‘법령’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 법령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정한 행정규칙과 국회 규칙, 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정한 행정규칙도 법령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② 행정규칙의 시행일 계산 규정 보완(안 제7조)

- 현행 제7조*를 훈령 등의 공포제도 도입 근거로 오해하지 않도록, 훈령 등의 시행일 계산은 발령·고시·공고한 날로 함을 명확히 함.

* 「행정기본법」 제7조 규정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3. (생략)

③ 취소 또는 철회 시 손실보상 일반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 위법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거나 적법한 수익적 처분을 공익목적 등으로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도록 손실보상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
- 손실보상에 관한 개별법에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지급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④ 체납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상한에 관한 일반규정 마련(안 제28조)

- 체납된 과징금에 부과되는 가산금을 규정한 개별 법률마다 가산금의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두는 경우 그 상한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함.

⑤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관련된 행정쟁송 제기 대상의 명확화(안 제36조제4항)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⑥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 제기 안내 규정 마련(안 제36조제5항)

-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에 규정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함.

*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규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3. (생략)

<신설>

규·고시·지침 등은 고시·
공고 등의 방법으로 발령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3.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취소 또는 철회의 손실
보상) ① 행정청은 제18조제1항
에 따라 처분(인허가 등 당사자
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을 취소하거나 제19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
하는 사유로 처분을 철회한 경
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당
사자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하였을 것

2.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
치가 있을 것

3. 당사자에게 처분의 취소 또
는 철회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
거가 되는 법률에는 다음 각 호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② (생략)

<신 설>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③ (생략)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

2.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손익상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손실보상금의 지급방법과 절차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해당 가산금의 상한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신 설>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
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
-----.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
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
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
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
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제6항-----

-----.

⑧ -----

-----.

1. ~ 4. (현행과 같음)

5. ----- 출입국-----

· 귀화 ·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생략)

--

6. (현행과 같음)